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역안보과 이태휘 과장(044-203-4050), 정해진 사무관(044-203-4058)
김헌석 주무관

『2014 무역안보의 날』 개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24개사 지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 21.(화)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한 24개사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을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 24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AAA등급(삼성SDS, 대우인터내셔널 2개), AA등급(현대중공업, 신흥정밀 등 16개), A등급(삼성SDI, LG전자 등 6개)

○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는** 올해 1월 시행 이후 총 53개사(AAA 11개, AA 34개, A 8개)가 지정됐으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스스로 이행 중이다.

*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이 수출관리 능력 및 실정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수출관리를 이행

○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판정제도 개선, 정보기술(IT)분야 규제 완화, 전략물자 자율 관리능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도 21일부터 시행됐다.

-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 부담완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 **(판정제도 개선)**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품목명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연장, 사전판정사유 명시 및 판정결과 공개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도 공개가 가능함.

- **(정보기술(IT)분야 규제완화)** 수출된 소프트웨어(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소프트웨어(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 확충)**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판정실적 보고 의무화.

□ 올해「무역안보의 날」은 국제 통제체제*에 따른 국제규범 준수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 행사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2014 무역안보의 날 >

① 일시・장소: 10. 21.(화),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② 참석: 주한 외국대사, 수출기업인, 전략물자 관련기관 등 약 300여명
③ 주요내용: 기념식(기조연설, 유공자 포상 등), 무역안보워크숍, 무역안보 포럼

○ 특히,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첨단소재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원자력안전위원장상, 국방부장관상, 방위사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 1.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
2. 선택형 CP 제도
3. 선택형 CP 기업 리스트
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정해진 사무관, 김헌석 주무관(☎ 044-203-4058, 40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4년 무역안보의 날 행사

□ 개요

○ 행사명 : 「2014 무역안보의 날」

○ 일시·장소 : 10.21(화)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관리원

□ 주요행사

○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 10.21(화) 14:00~14:30 (30분)

- 유공자 포상(장관) : 총 21개

○ 무역안보 워크숍 및 포럼 : 10.21(화) 14:45~18:00 (195분)

□ 세부 행사일정

구분	분	행사내용		비고	
기념식 14:00~14:30	2	개식선언 / 오프닝 영상 / 국민의례		사회자	
	3	환영사		이사장	
	2	2014 수출관리 활동보고		PPT영상	
	3	기조연설		Gary K. Bertsch	
	12	유공자포상		차관	
	3	격려사			
	4	기념공연		퓨전 클래식	
	1	폐식선언		사회자	
무역안보 워크숍 14:45~18:00	2	개식선언 / CP로고 선포	무역안보 학술포럼 (중회의실A) 14:45~18:00	5	개회사 (전략물자관리원장)
	20	CP 지정서 수여 (무역정책관)		5	축사(국제법협회장)
	3	축사 (무역정책관)		5	축사 (안보통상학회장)
	20	국제수출통제체제 주요 개정 동향(관리원)		35	수출통제 최근 동향과 전망 (최승환 교수)
	20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주요 개정내용 (산업부)		35	무역안보의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Gary K. Bertsch)
	20	CP 우수 사례 (삼성SDS)		20	휴식
	20	전략기술 관리방안 (황일순 교수)		35	주요 분쟁국에 대한 제재 동향(박언경 교수)
	15	휴식		30	전략기술 이전 허가제의 의의 (구재림 팀장)
	30	전략물자 퀴즈대회 (사회자)		15	종합토론 및 Q&A
	15	행사종료 (관리원)		10	사진촬영
	20	YEST 해단식 (관리원)			

붙임2 선택형 CP 제도

□ 개요

○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시행하는 업체의 신청 하에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 업체가 수출관리 능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선택·신청하고,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

* 전략물자 판정능력,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등

- 기업의 규모(대/중소) 및 업종(제조/상사)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3단계(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 평가기준 : 수출관리조직 및 규정, 최고경영자의 준수의지, 수출거래심사, 품목분류관리, 교육, 감사, 문서관리,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정보보안관리

○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불법수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가능

□ 주요 인센티브

○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한 번의 허가로 2-3년간 동일 품목(사용자포괄허가) 또는 동일 최종사용자(품목포괄허가)에 대하여 수출 가능

○ 비CP기업 보다 허가 처리기간이 최대 10일 단축(15일에서 5일로 단축)

○ 旣수출건과 동일 품목 동일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출 서류 면제

붙임3 선택형 CP 추가지정 기업 리스트(24개社)

등급	기업명	분류	업종
AAA (2개사)	(주) 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상사
	삼성에스디에스 (주)	대기업	제조
AA (16개사)	주식회사 콕스	중소기업	제조
	㈜ 신흥정밀	중소기업	제조
	㈜ 쎄트렉아이	중소기업	제조
	주식회사케이앤에스아이앤씨	중소기업	제조
	현대중공업 (주)	대기업	제조
	(주) 비컴아이엔씨	중소기업	상사
	싸이머코리아유한회사	중소기업	제조
	비코코리아 유한회사	중소기업	상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기업	제조
	에릭슨코리아 (주)	중소기업	제조
	㈜ 테스	중소기업	제조
	㈜ 투비소프트	중소기업	제조
	티아이코리아	중소기업	상사
	ASML코리아	중소기업	상사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코리아	중소기업	상사
	스태츠칩팩코리아	대기업	제조
A (6개사)	나가세엔지니어링서비스코리아 ㈜	중소기업	제조
	삼성에스디아이 (주)	대기업	제조
	엘지전자 (주)	대기업	제조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중소기업	제조
	매그나칩반도체	대기업	제조
	LS메카피온	대기업	제조

붙임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내용

1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최종사용자 확인 부담완화, 제20조)** 바세나르 국제통제체제 관련 품목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수입목적확인서가 있는 경우 3국으로 재수출하지 않는 전제하에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

○ **(수출허가 신청서류 축소, 제21조)** 전시회 출품 제품의 재수입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최종수하인진술서, 최종사용자서약서)

2 판정제도 개선

○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13조)** 기업의 자가판정 결과를 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반기별 점검을 하여 자가판정에 대한 신뢰성 검증

○ **(사전판정결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제15조)** 사전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사전판정 유효기간 연장, 제16조)** 통제품목의 개정이 없고, 신청품목의 규격 등의 변경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도록 개정

○ **(사전판정사유 및 판정결과 공개, 제16조, 제4호, 제4호의2 서식)** 판정사유 및 판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전판정의 투명성을 제고

3 IT분야 규제완화

○ **(암호화품목 및 SW 허가면제 확대, 제26조 1항 제11호, 제12호)**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 품목 및 SW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확대

○ **(SW 제조사 소매활동에 대한 허가면제, 별표2)** 전략물자 판정 기준을 “소매상”에서 “소매판매처”로 개정하여 제조업자의 소매 활동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4 CP자율관리 역량 확충

○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제28조 제2항)**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요건에 해외전시회 참가, 2년 이상의 장기수출계약 체결 등을 추가

○ **(중개허가면제, 별표19)** AA등급 이상의 CP기업에 대해 중개허가 면제 신설

○ **(중개·판정실적 보고의무화, 별지 제19호 서식)** 자가 수출실적, 사후보고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고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